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4. 23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0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: 2020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미래지향적인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
○ 위원회의 구성, 임기(안 제3조~안 제4조)

○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)

○ 위원의 의무, 제척·회피, 해촉(안 제6조~제8조)

○ 위원회 회의 운영(안 제9조)

○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 및 간사(안 제10조)

○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(안 제11조)

○ 의제별 위원회 구성(안 제12조)

- 교육지원청 위원회 설치(안 제13조)
- 위원회 심의결과 처리(안 제14조)
- 회의 참석 위원 수당(안 제15조)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의·조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고,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, 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9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2조에 전문 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연구와 협의, 의견 제안을 수행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13조에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소속으로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교육발전 방안과 민관협력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조정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음.

나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이 충북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데 있으므로,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타당성,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기준 및 위촉과 관련된 세부사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안 제12조의 의제별 위원회와 안 제13조의 교육지원청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제별 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 위원회와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안의 위원회가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, 안 제14조의 단서 조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